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80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여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 우선공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우대를 강화하도록 재직기간 배점을 확대하고,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첨부서류를 최소화하며, 우선공급자로 추천받은 후 미청약시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는 등 지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첨부서류를 최소화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개정)
- 나.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를 우대하고자 재직기간의 배점을 확대하고, 재직기간 배점산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반영하는 등 배점부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9조제2항)
- 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선공급자로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에 대상자 추천 배점에서 최대 10점의 감점을 부여하여 미청약 사례를 예방하여 다음 순위 근로자가 청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고시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대표 및 이사”를 “이사”로, 같은 호 단서 중 “이사”를 “이사(대표이사는 제외)”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사업자등록 증명원
3. 법인등기부 등본
4. 재무제표(필요시)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와 제6호를 제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 라목 중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한다.

1. 우선공급 대상자의 중소기업 재직기간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한 값(총

재직기간)에서 1년 미만의 개월 수를 절사한 연수(年數)에 3을 곱하고, 현재 직장 이전에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에 2를 곱한 수를 뺀 값으로 한다. 단, 재직기간 점수의 합이 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재직기간 점수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점수 = (3 × 총 재직기간(1년 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 × 2)

2. 우선공급 대상자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또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한다.

제9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단서 중 “10점”을 “7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 중 “5년 이상인 자로서, 가입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시점부터 3년간 3점”을 “5년 이상인 자는 가입 기간 5년을 경과한 시점부터 가입 당시의 중소기업에 계속 재직하는 동안 2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5점”을 “3점”으로, “4점”을 “2점”으로, “3점”을 “1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서 재직 중인 「기초

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의 연구 전담요원 근로자는 5점을 부여한다.

다만, 중복 지위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위 1개만 인정한다.

8. 우선공급 대상자(세대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 등은 추천후보자의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우선공급 추천을 신청하는 때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내는 10점, 1년 초과 2년내는 5점을 감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 취하서를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대상자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5.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	수수료  없음

	수증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확인)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법인등기부등본 4. 재무제표(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 ○○○ (직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접수 담당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제조업 영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의 4. 기타사항란과 첨부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사항	
구분	해당분야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제조 소기업 <input type="checkbox"/> 뿌리산업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	<input type="checkbox"/> 기업부설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명장 또는 숙련기술전수자 <input type="checkbox"/> 우수 숙련기술자 <input type="checkbox"/> 성과공제 만기 후 계속 재직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input type="checkbox"/> 기술사 또는 기능장 <input type="checkbox"/> 기사 또는 산업기사 <input type="checkbox"/> 기능사
수상경력	<input type="checkbox"/> 훈·포장 <input type="checkbox"/> 대통령, 총리 표창 또는 상장 <input type="checkbox"/> 장관, 차관급이상 청장,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input type="checkbox"/>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미성년 자녀 (태아포함)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1명 <input type="checkbox"/> 2명 <input type="checkbox"/> 3명 이상
주택건설지역 재직	<input type="checkbox"/> 해당
무주택기간 (최근 5년)	<input type="checkbox"/> 해당
추천 받은 후 미청약자	<input type="checkbox"/> 1년내 신청 <input type="checkbox"/> 1년 초과 2년내 신청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li> <li>2.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li> <li>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li> <li>4. 분야별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경력 :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상패 등은 사진)</li> <li>- 기업부설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연구전담 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연구개발인력 현황(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비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li> <li>-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자격증 : 대한민국명장 또는 숙련 기술자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증서</li> <li>- 성과공제 만기자 :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만기증서, 납부확 인서</li> </ul> </li> </ol>	수수료 없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자격증 및 증서 사본</li> <li>- 뿌리산업 종사자 : 공장등록증명서</li> <li>- 미성년 자녀 :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증</li> <li>- 무주택기간 관련 서류 :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했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li> </ul> <p>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6.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확인)</li> <li>2. 사업자등록증명원</li> <li>3. 법인등기부등본</li> <li>4. 재무제표(필요시)</li> </ol>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 ○ ○ ○

(서명 또는 인)  
(직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접수 담당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제조업 영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의 붙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붙임】			
배점기준표			
지 방 청 명		작 성 자	(인)
기 업 명		신 청 자	
항 목	배점	산정 근거	점수
중소기업 재직기간	75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재직기간 :    년 <input type="checkbox"/> 현재 직장 전 재직 중소기업 수 :    개 ※ 산식 : (3×재직기간(1년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재직 한 중소기업수×2)	
정책적 우대	(25)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5	<input type="checkbox"/> 제조 소기업 <input type="checkbox"/> 뿌리산업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	7	<input type="checkbox"/>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5점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 : 5점 <input type="checkbox"/> 우수숙련기술자 : 3점 ※ 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우수숙련기술자 중복의 경우 유리한 1개 항목 인정 <input type="checkbox"/> 성과공제 만기자 : 2점	
자격증 보유	3	<input type="checkbox"/> 기술사 또는 기능장 : 3점 <input type="checkbox"/> 기사 또는 산업기사 : 2점 <input type="checkbox"/> 기능사 : 1점 ※ 중복의 경우 유리한 1개 항목 인정	
수상경력	5	<input type="checkbox"/> 훈포장 : 5점 <input type="checkbox"/> 대통령·총리 : 4점 <input type="checkbox"/> 장관(청장)·광역자치단체장 : 3점 <input type="checkbox"/>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장 : 2점	
미성년 자녀 (태아포함)	5	<input type="checkbox"/> 자녀 수 1명 : 1점 <input type="checkbox"/> 자녀 수 2명 : 3점 <input type="checkbox"/> 자녀 수 3명 이상 : 5점	
지침 운영상 가감점	(10)		
주택건설지역 재직	5	<input type="checkbox"/>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소재 기업 재직	
무주택기간	5	<input type="checkbox"/>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간 무주택	
추천받은 후, 미청약자	-10 (감점)	<input type="checkbox"/> 1년내 신청 : -10점 <input type="checkbox"/> 1년 초과 2년내 신청 : -5점	
합 계	110		

년    월    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함께 중소기업부 고시 제2020-26호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과조치) 제9조제3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게 된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대로 신청인이 제출한다.





무 중인 기업의 재직기간 : 1년마다 3점씩 부여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기업 이전에 중소기업 재직기간 : 1년마다 2점씩 부여

2. 우선공급 대상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서 재직 중일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한다. 다만, 재직 중인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서 1년 미만의 개월 수를 절사한 연수(年數)에 3을 곱하고, 현재 직장 이전에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에 2를 곱한 수를 뺀 값으로 한다. 단, 재직기간 점수의 합이 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재직기간 점수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점수 = (3 × 총 재직기간(1년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 × 2)

2. 우선공급 대상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또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한다.

3. 우선공급 대상자가 수상경력  
이 있을 경우 다음 각 목에 따  
라 점수를 부여한다. 단, 각  
목의 합이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훈·포장 : 5점

나.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또  
는 상장 : 4점

다. 장관·차관급 이상 청장·광  
역자치단체장 표창 또는 상  
장 : 3점

라.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  
자기관장 표창 또는 상장 :  
2점

4.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기술·  
기능 인력 및 핵심 인력에 대  
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단, 각  
목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  
다.

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부  
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  
구개발부서에서 연구전담요  
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는  
7점을 부여한다. 다만, 비수  
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3. -----  
-----  
-----.  
-----  
-----  
-----.

가. -----

나. -----  
-----

다. -----  
-----  
-----

라. 기초자치단체장 -----  
-----

4. -----  
-----  
-----  
-----.  
-----7점-----  
-----.

가.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서  
재직 중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조제7호의  
연구전담요원 근로자는 5점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의미한다.

나.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한 대한민국 명장·숙련기술전수자는 5점, 우수 숙련기술자는 3점을 부여한다.

<단서 신설>

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제1호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자로서, 가입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시점부터 3년간 3점을 부여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은 5점, 기사 또는 산업기사는 4점, 기능사는 3점을 부여한다. 단, 중복 자격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한다.

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을 부여한다.

나. -----  
-----  
-----  
-----.

다만, 중복 지위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위 1개만 인정한다.

다. -----  
-----  
-----  
----- 5년 이상인 자는 가입 기간 5년을 경과한 시점부터 가입 당시의 중소기업에 계속 재직하는 동안 2점 -----.

5. -----  
----- 3점 -----  
----- 2점 -----  
-- 1점 -----.  
-----.

<삭 제>

\* 2호에서 규정

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는 5점을 부여한다.

7. ~ 8. (생략)

<신설>

9. (생략)

<신설>

6. ~ 7. (현행과 같음)

8. 우선공급 대상자(세대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 등은 추천후보자의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를 확인을 위한 전산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9.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우선공급 추천을 신청하는 때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내는 10점, 1년 초과 2년내는 5점을 감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 취하서를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